#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의 改正方向

李 庸 俊

<目 次>

Ⅰ. 序 言
Ⅱ. 企業會計原則의 沿革
Ⅲ. 美·日 企業會計原則과의 比較 檢討
Ⅳ.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의 補完을 要하는 事項
Ⅴ. 結 言

## Ⅰ. 序 言

"企業會計는 財務諸表에 의하여 企業의 經濟的 資產의 發生 消滅과 그에 따라 發生하는 企業에 대한 利害關係의 變化를 忠實히 報告함은 勿論, 다른 期間과 다른 企業의 財務諸表와도 比較할 수 있도록 統一的이고 客觀的으로 定義된 諸原則에 依據하여 處理되어야 한다.

企業會計原則은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企業會計의 實務 속에서 發達된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된 바를 要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반드시 法令에 의하여 強制되지는 않더라도 모든 企業이 그 會計를 處理함에 있어서 遵守하지 않으면 안 될 基準이다(1)."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된" 企業會計原則이 1958年 7月 「財務諸表規則」과 함께 告示된 지도 十餘年이 지났다.

企業會計原則이 告示된 當時의 우리나라 經濟는 6.25 動亂의 莫甚한 被害를 어느 정도 回復하고 中間安定期에 들어가 있었으나 經濟의 全般的인 水準은 보잘것이 없었다. 企業의 대부분은 商·製造企業이었으며, 그 種類나 수도 적었고, 企業規模 自體도 中小企業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8.15 解放 이후 얼마 안 되었을 뿐 아니라 뒤미처 6.25 動亂이 겹쳐서 아직 民族資本이 形成되지 못한 채 外國援助에 依存하였던 經濟狀態下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企業經營의 形態도 個人經營 내지는 家族經營이 대부분이었고, 大企業이라 할 수 있는 것은 國營企業體가 몇개 있었을 뿐, 이나마 國家가 經營主였으므로 그 經營은 專門的일 수 없었다.

---

筆者 :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附設 韓國經營硏究所 硏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敎授

(1) 企業會計原則, 總說. 1958.

P
658
Se67m
V.6
C.2

企業外部環境 또한 國內經濟의 發展이 成熟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企業으로서는 상당한 制約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政府의 特惠, 援助資金의 利用, 「인플레이션」에 便乘한 他人資本 調達로 迅速하게 資本蓄積을 이룩할 수 있었다.

또 製造企業으로서는 生產이 需要에 미치지 못하는 狀態였으므로 製造만 하면 販賣가 가능하던 때라, 企業은 經營의 合理化나 原價節減에 대해서 神經을 쓸 必要가 없었다. 더구나 「인플레이션」은 이러한 經營의 非合理性을 價格引上으로 克服함을 可能하게 해 주었다. 이처럼 企業의 內外 與件이 經營에 대한 正確한 情報提供으로서의 會計의 處理를 經營者로 하여금 忘却하게 하였으니, 비록 政府가 企業會計原則을 제정하였지만 業界로서는 이를 受容하는 데 積極的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當時의 援助依存經濟는 稅制에 있어서도 퍽 寬大한 편이었으니, 企業家들이 企業會計에 關心을 가지지 못한 것도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1960年代에 들어서서 自立經濟體制의 指向과 연이은 兩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은 우리나라 經濟構造를 高度化시켰을 뿐만 아니라 企業內部에 있어서의 經營 自體에 革新的인 變化를 가져오게 하였다.

外資導入과 함께 借款이라는 巨大한 他人資本에 의한 大企業이 續出하였고, 輸出의 增大와 貿易自由化의 原則에 따라 過去의 保護體制에서 脫皮하여 國內企業은 國際化를 指向하게 되었다. 國際競爭의 冷酷性, 國內企業間의 競爭의 增大, 販賣者中心市場으로부터 서서히 購買者市場으로 轉移하는 過程에서 企業들은 다투어 經營合理化를 위하여 努力하게 되었으며 많은 經營 技法과 原則 및 理論을 外國에서 導入, 習得하였다. 특히 企業會計原則에 맞는 會計處理에 拍車를 가한 것은 稅法 및 商法의 改正이었다. 自立經濟體制確立과 財政規模 膨脹에 따르는 內國稅의 確保의 필요성은 政府로 하여금 國稅廳을 新設하는 한편 전반적인 租稅行政을 整備 強化하게 하였다. 自進申告納付制度의 採用, 納稅法人의 帳簿備置와 複式簿記의 強制, 財務諸表公告의 義務化 등 一聯의 措置는 企業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게 企業會計原則에 따른 會計處理를 強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당초에 企業會計原則이 國內 實務 속에서 一般的으로 公正 妥當하다고 認定되어 誕生된 것이 아니라 政府에 의해서 一方的으로 안겨진 데 불과하며, 한편 企業으로서는 企業會計原則에 立脚한 會計處理보다 稅法이 規定하는 바에 더욱 影響을 많이 받았던 것이 事實이다.

경위는 여하간에 현재 企業會計原則은 많은 企業이 準據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財務諸表規則도 財務諸表 作成에 많은 도움을 주어 왔다. 그런데 이들이 制定된 뒤 十餘年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964年 5月 27日 商法改正에 따른 用語의 修正을 中心으로 한 財務諸表規則의 改正 이외에는 이렇다 할 修正이 없었던 것은 자못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企業會計原則이 비록 항상 準據되어야 할 原則이기는 하나, 企業環境이 變함에 따라 企業會計原則도 점차 變化하는 것은 外國의 事例에서도 널리 볼 수 있는 일이며,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에 列擧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企業들이 慣行的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으며, 설사 列擧되어 있다 하더라도 變更시켜 사용하는 것이 허다하다.

특히 外國企業과의 合作投資로 設立된 企業들은 外國 企業會計原則과의 差異로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見地에서 本論文에서는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을 中心으로 하여 問題點을 살펴보고 外國의 경우와 比較하여 현재의 經營環境에 보다 適合한 會計原則으로 修正하는 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 Ⅱ. 企業會計原則의 沿革

會計原則이란 會計의 理論과 實務中에서 여러가지 代替案과 관례가 있을 때 이를 選擇하기 위한 「가이드」로서 일반적으로 受容되는 會計의 理論이라는 說明(2), 또는 애초에는 經驗과 論理에서 出發한 會計假定이 널리 認定을 받고 有用하게 되어 一般的으로 妥當하다고 認定된 會計原則으로 發展되고, 이것이 더욱 發展되어 會計人으로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될 "一般的으로 公正 妥當하다고 認定된 會計原則"이 되었다(3)는 說明 등에서 알 수 있듯이, 先進外國의 경우에는 먼저 各 企業體에서 쓰이고 있는 實務와 學者들의 理論이 綜合되어 名實共히 企業會計原則이 될 수 있었다.

現代企業會計에서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發生主義會計는 中世的 會計實務로부터 近代的인 會計實務로 轉換하게 됨에 따라 理論的인 成立을 보았으며 收益的支出과 資本的支出의 區分의 原則은 企業의 大規模化에 따라 必然的으로 要求된 것이다.

日本의 경우만 하더라도 減價償却을 規定한 會計原則과 이에 의한 費用配分의 原則은 一般的 承認을 얻기까지 오랜 期間이 必要하였으며 稅法과 商法과 對立矛盾을 겪은 後에야 이루어졌다(4). 오늘날에 있어서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한때는 稅法上 減價償

(2) E.L. Kohler, *A Dictionary for Accountants*, p. 13, Prentice-Hall. 13ed.
(3) AICPA; *Accounting Terminology*, Bulletin No. 1.
(4) 黑澤清, 近代會計學. p. 276, 春秋社 1966.

却費는 經費로서 否認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企業會計原則은 法律이 아니라, 단지 規則的인 性質을 가지며 強制性이 없는 한낱 會計行爲의 判斷의 基準에 不過할 뿐이므로, 強制性을 지닌 強行法規와는 종종 衝突이 일어나는 수가 있다.

즉, 稅法이나 商法은 企業會計原則이 發展하는 데 있어서 制度的인 障害가 될 때가 있으며, 반대로 企業會計原則의 成立·發展은 商法이나 稅法에 있어서의 理論體系까지도 改變으로 이끌기도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오늘날 商法이나 稅法에서 企業會計原則과의 差異를 많이 指摘할 수 있으며, 許多한 未備點을 發見할 수 있다. 예컨대, 商法에 있어서 株式會社의 計算書類로서 財產目錄을 揭記하고 있는 것은 舊商法의 制度的 遺物인 바, 1962年의 改正에서도 그대로 살아 있어 企業會計原則의 財務諸表 內容과 相値되고 있다. 또 商法에서는 企業會計原則과는 달리 剩餘金計算書의 重要性을 아직 認識하지 못하고 있으면서[5] 한편으로는 利益準備金과 資本準備金이라는 制度를 導入하고 있어 企業會計原則의 立場에서 볼 때 均衡이 맞지 않는 느낌을 갖게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企業會計原則과 商法이나 稅法間의 論理體系의 矛盾은 早速히 是正 除去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企業會計原則은 企業의 會計處理「가이드」로서뿐만 아니라 商法·稅法을 改正하기 위한「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法人稅法의 例를 보면 1967年 11月末 以來 1971年 12月 28日까지 4年間에 무려 7回의 改正을 보았다.

따라서 現在 狀態로서는 오히려 稅法이 企業會計原則을「리이드」하는 立場에 서고 있으며, 企業會計原則이 死文化할 염려까지 있는 형편이다.

美國의 경우, 美國會計士協會(이하 AIA로 略稱함)가 최초로 公刊한 會計原則은 財務諸表監査制度를 改善할 目的으로 뉴욕 株式去來所와 연락, 特別委員會가 公表한 意見書

---

(5) 商法 第447條의 "計算書類의 作成"에서 理事는 定期總會 會日의 2週間 前에 監事에게 提出할 書類로서
① 財產目錄 ② 貸借對照表
③ 營業報告書 ④ 損益計算書
⑤ 準備金과 利益이나 利子의 配當에 關한 議案을 열거하고 있는 데 비해,
企業會計原則에서는 第2節 財務諸表 第1에서 "企業會計原則에서 財務諸表라 함은 損益計算書·剩餘金計算書·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貸借對照表와 財務諸表附屬明細表를 말한다"고 規定하고 있어, 商法과 비교할 때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만이 共通된 財務諸表로 되어 있다.

를 토대로 1934年에 發表한 "株式會社會計의 監査"의 내용에 있는 5項의 會計原則이었다.

AIA 會計五原則은 未實現利益計上을 禁하는 實現主義, 資本剩餘金, 利益剩餘金, 自己株式保有, 內部利害關係者에 대한 債權의 記載方法에 관한 原則을 밝혔다.

이에 이어 S.E.C.는 會計「시리즈」에 "會計原則探求運動"을 展開하였다. 1938年에 샌더즈(Sanders), 햇필드(Hatfield)와 무어(Moore) 3人에 의하여 "會計原則에 관한 意見書"(A Statement of Accounting Principles)를 내었는데, 이것이 有名한 S.H.M. 會計原則이다.

S.H.M. 會計原則은 AIA의 會計五原則이 體系가 없는데 비해 體系가 서 있어 비로소 最初의 會計原則다운 面貌를 갖춘 것으로서, 이 體系는 그후 世界 여러나라의 會計原則의 原型이 되고 있다. 이의 構造를 보면,

**(1) 一般原則**

資本과 利益 區分의 原則을 中心으로 正規簿記의 原則, 剩餘金의 原則, 繼續性의 原則, 保守主義의 原則을 列擧하였다.

**(2) 損益計算書原則**

實現主義의 原則, 發生主義의 原則, 期間費用配分의 原則을 列擧하였다.

**(3) 貸借對照表原則**

貸借對照表의 明瞭性의 原則, 比較性의 原則, 評價의 原則 등을 列擧하고 있다.

**(4) 連結計算書原則**

關係會社와의 連結計算書 作成의 原則을 列擧하고 있다.

S.H.M. 原則은 一般의 信任을 얻은 傳統的인 會計原則을 集大成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S.H.M. 세 사람의 개인적인 着想과 意見의 所產으로 誤解될 염려가 있었고, 또 실제로 意見의 對立을 보인 스콧트(Scott)와 페이튼(W.A. Paton)의 批判에 直面하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1936年 美國會計學會(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가 발표한 "株式會社報告書에 관한 會計原則試案" (A Tentative Statement of Accounting Principles Affecting Corporate Reports)이 AAA 會計原則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會計原則試案은 세 가지 部門으로 構成되었는데, 첫째는 原價와 價値(Costs and Value), 둘째는 收益의 測定 (Measurement of Income), 세째는 資本과 剩餘金(Capital and Surplus)으로 區分된다. 會計學上 곤란한 問題는 이 세 가지 면에서 主로 發生되기 때문이다.

이 會計原則試案에서는 몇 가지의 基本的 假定을 갖고 있는 바 첫째, 會計의 決算財務諸

表는 一聯의 一貫된 會計理論의 體系를 계속적으로 지켜야 하며, 둘째, 財務諸表의 目的은 企業의 經濟的 資源의 利用 및 結果에 관하여 債權者와 投資者의 利害의 變動狀態를 財務的 用語로써 잘 表現함에 있으며, 세째, 會計는 本質的인 評價의 課程이 아니라 當期와 以後의 會計期間에의 歷史的 原價와 收益의 配分이라는 基本原則을 세우고 있다.

1936年의 會計原則試案을 公表한 5年 後 各方面으로부터의 批判을 받아 1941年에는 다시 美國會計學會 常任委員會가 이의 改訂案으로 "會社財務諸表의 基礎를 이루는 會計原則"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을 發表했다. 이 會計原則은 "原價", "收益 및 이의 實現", "利益 및 資本"이라는 會計機能의 根本命題를 中心으로 하여 一次試案보다 簡潔하고 企業會計의 經營的 機能과 社會的 機能을 強調한데 그 特色이 있다. 나아가서 各 企業間의 財務諸表의 비교와 同一企業의 財務諸表의 期間比較를 가능하게 하고 會社의 會計實務에 있어서의 不明瞭性을 대상으로 검토하며 財務諸表의 客觀的인 解釋을 곤란하게 하는 原因을 제거하고자 努力을 集中하였다. 이러한 곤란을 排除하기 위하여 全會社 財務諸表는 그 背後에 企業의 財政狀態와 經營成績에 관한 意見을 正當化하기에 足한 充分하고 統一的이며 客觀的인 會計諸原則을 基礎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1948年 6月에 들어 美國會計學會는 다시 第3次 改訂版을 내어 과거의 會計原則에서 떠나 會計基準(Accounting Standards)이라는 用語를 使用하였다(6). 이 案은 "企業財務諸表의 基礎를 이루는 會計槪念과 諸基準"(Accounting Concepts and Standard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이라는 題目이 붙여졌는데 여기에서 會計基準은 會計原則 全構造의 一部로서 볼 수 있다(7).

1948年의 會計原則은 다음과 같이 構成되었다.

① 序言 ② 資產 ③ 利益 ④ 收益 및 經費 ⑤ 負債 및 株主持分 ⑥ 財務諸表

이에 이어 美國會計學會는 1949年 "會社財務諸表의 基礎를 이루는 槪念 및 諸基準에 관한 委員會"를 設置하고, 企業의 財務報告를 중심으로 會計原則에 관한 諸問題를 검토하여 會計原則에 대한 補充意見書(Supplementary Statement)를 發表하였으며, 다시 1957年에는 이를 종합하여 새로운 會計原則意見書를 公表하였다.

1957年에 改訂된 會計原則意見書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

(6) 會計基準이라는 用語는 이때 最初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1938年에 發刊된 페이튼과 리틀턴의 著述한 "*Introduction 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7) 黑澤清, 前揭書, p. 218

① 序言　② 基礎的 諸槪念　③ 資產　④ 利益의 決定　⑤ 持分

⑥ 明瞭性의 基準, 表示의 範圍, 表示의 手段, 比較性

새로 改訂된 會計原則意見書의 特徵은 會計原則에 앞서 基本的인 會計公準(Convention)을 밝힌 데 있다. 즉, 企業實體(Business entity)는 企業實體의 公準으로 企業繼續性(Business continuity)은 會計期間의 公準으로 貨幣的 測定(Money measurement) 槪念은 貨幣評價의 公準으로 연결되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美國의 企業會計原則의 變遷過程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原則이 歷史가 日淺한 데 비하여 美國의 會計原則이 歷史的 發展過程이 깊고 複雜함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本論文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의 改正方向을 論하는 데 있어 各部門別로 美國의 會計原則과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을 比較 論議하고자 한다.

特히 美國의 경우는 위에서 言及한 會計原則 외에도 美國公認會計士會 企業會計原則審議委員會(Accounting Principles Board of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에서 發表되는 會計原則意見書(Opinion of Accounting Principles Board—略稱 APB)와 會計用語回報(Accounting Terminology Bulletin)와 APB 이전에 發刊된 會計硏究回報(Accounting Research Bulletin—略稱 ARB) 및 財務諸表規則에 관한 美國證券去來委員會(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제정의 S-X Regulations와 S.E.C. Accounting Series Releases의 內容을 參考로 하고자 한다.

## Ⅲ. 美·日 企業會計原則과의 比較 檢討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의 構成은

第 1 章 總　說

序論, 一般原則, 財務諸表

第 2 章 損益計算書

總則, 營業損益計算, 純損益計算

第 3 章 剩餘金計算書와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總則, 剩餘金計算書,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第 4 章 貸借對照表

總則, 資產, 負債, 資本, 資產의 評價原則

으로 되어 있다. 이 構成體系는 가깝게는 日本의 企業會計審議委員會(當初의 名稱은 企業會計制度對策調査會)가 1949 年 7月 9日에 發表하였던 企業會計原則에 많은 영향을 받았

고, 멀리는 1948年의 AAA 會計原則에 흡사한 構成을 하고 있는 바, 이를 比較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企業會計原則의 構成**

| | AAA 會計原則(1948年) | 日本企業會計原則 | 韓國企業會計原則 |
|---|---|---|---|
| 一般原則 | ①資產 및 原價의 原則<br>②收入 및 經費의 原則<br>③負債 및 資本의 原則 | ①眞實性의 原則<br>②正規簿記의 原則<br>③資本去來와 損益去來의 區分 原則<br>④公開性의 原則<br>⑤繼續性의 原則<br>⑥保守主義의 原則<br>⑦單一性의 原則 | ①眞實性의 原則<br>②正規簿記의 原則<br>③重要性의 原則<br>④確實性의 原則<br>⑤繼續性의 原則<br>⑥剩餘金區分의 原則<br>⑦安定性의 原則<br>⑧明瞭性의 原則<br>⑨單一性의 原則 |
| 財務諸表規則 | ①損益計算書의 표시에 관한 原則<br>②貸借對照表의 표시에 관한 原則 | ①損益計算書原則<br>②貸借對照表原則 | ①損益計算書原則<br>②剩餘金計算書와 剩餘金處分計算書原則<br>③貸借對照表原則 |

### 1. 一般原則

위의 표에서 企業會計原則의 基本的 構成은 비슷하나, 一般原則에 있어서 AAA 會計原則과 韓·日 兩會計原則의 構成要素가 약간 다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前者가 會計處理의 原則을 주로 一般原則에 包含시키고 있는 데 비해, 後者는 會計處理의 原則과 會計報告의 原則을 함께 列擧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韓·日 兩國의 一般原則에 있어서도 項目間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즉, 韓國企業會計原則中 ①·②·⑤·⑥·⑨의 5個原則은 같고 나머지 4個原則은 다르다. 그러나 실제로 內容面에서 보면 日本企業會計原則 ④의 公開性의 原則은 韓國의 明瞭性의 原則과 같고, ⑥ 保守主義原則은 韓國의 安定性의 原則과 같으며, 重要性의 原則과 確實性의 原則에서 차이가 있으나 重要性의 原則은 正規簿記의 原則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日本의 경우 正規簿記의 原則에 重要性의 原則을 結合시키고 있다[8]. 그리고 確實性의 原則 역시 正規簿記原則의 目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正規簿記原則이 가지고 있는 具體的 意味는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

첫째로 正規簿記의 原則은 眞實性의 原則을 根據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正規簿記의 最終產物인 財務諸表가 企業의 眞實과 公正한 狀況을 報告하여야 하기 때문이다[9]. 둘째로

(8) 黑澤淸, 前揭書, p. 297
그리고 새로운 修正案에서는 重要性의 原則에 대하여 註解에서 다시 說明하고 있다.
(9) 英國會社法 第147號 2項의 규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찾아 볼 수 있다.

正規簿記의 原則은 重要性의 原則과 密接한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眞實한 報告의 原則을 근거로 하여 金額과 科目의 重要性에 따라 또는 不正·誤謬가 생길 相對的 危險에 따라 明確하고 共通된 基準을 設定할 必要가 있기 때문이다. 세째로 正規簿記의 原則은 確實性의 原則의 效果를 達成하여야 한다. 이것은 "企業會計는 會計의 目的을 達成하는 데 確實한 效果가 確保되도록 處理한다"는 原則 自體가 正規簿記의 原則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正規簿記의 原則은 여러가지 原則을 包容할 수 있으며, 이러한 觀點에 따라 日本에서는 7 가지의 一般原則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一般原則은 事實上 論者의 觀點에 따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것이며, 가장 理想的인 것은 가장 적은 用語를 使用하여 全體의 原則을 說明하는 것이 될 것이고, 會計 自體의 假定조차 時代에 따라 變하듯이 一般原則 역시 變化하게 되므로 어느 時代에나 共通的인 一般原則이 必要할 것이다. 따라서 企業會計原則 첫머리에 나오는 一般原則은 보다 含蓄性있는 原則으로 調整하든가 아니면 美國의 경우와 같이 一般原則을 별도로 設定함이 없이 會計原則의 根柢에 흐르는 精神으로서 反映시키는 方向을 採擇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論理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一般原則에 한번 疑問을 提起하여 보자.

眞實性의 原則을 의하여 과연 財務諸表上에 眞實한 財政狀態 및 經營成績을 나타낼 수 있을까.

資本去來와 損益去來를 구별하기 위한 基準은 무엇인가. 우리는 資本的支出과 收益的支出의 區別基準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모호함을 많이 보아 왔다.

繼續性의 原則을 지키기 위하여 財務諸表는 과연 科目의 分類·配列·用語·樣式 등을 繼續 지키는데 의미가 있을 것인가. 또, 어느 정도 繼續하여야 繼續性의 原則을 滿足시키는 것일까.

眞實性의 原則과 安全性의 原則間에 矛盾은 없는 것일까. 즉 安全性의 原則에서 "企業의 財政에 不利한 影響을 미칠 可能性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對備하여 「적당히 健全한」 會計處理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適當히」란 用語는 眞實性의 原則에 違背되는 것이 아닐까.

單一性의 原則에서는 株主總會, 證券去來所, 金融機關 등 各種 目的에 맞는 "財務諸表를 作成하되 內容에 異同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지만, 企業會計內容이 그대로 稅務官署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事實이다.

이와 같이 보건대, 약간 逆說的일는지는 모르겠으나 一般原則 自體에 問題點이 있으며

原則間에 相互矛盾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損益計算書原則

#### (1) 總　則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은 損益計算書總說에서 "一會計期間에 發生한 모든 收益과 이에 對應하는 모든 費用을 記載하고 그 期間의 純損益을 表示하여야 한다"고 하여 發生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損益計算書를 作成하는 데 있어 現金主義와 發生主義의 區別이 있고, 이 중 現金主義를 使用할 경우 어떤 問題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說明할 必要가 없다고 본다. 더구나 現代의 企業會計가 과거의 現金主義會計에서 發生主義로 轉換하고 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記入原則에 대해서 보면 例外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發生主義項目의 例外로서 先給費用과 先受收益은 當期의 損益計算에서 除外하고 未支給費用은 當期의 損益計算에 計上한다고 되어 있어, 發生主義的인 面에서 보면 矛盾을 드러내고 있다. 勿論 이는 保守主義的인 입장에서 安定性의 原則만을 견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論議의 餘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日本의 경우에서도 이에 대한 論爭이 있었고, 會計學을 모르는 사람이나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混亂을 일으키는 것이 事實이다.

더구나 실제의 例에 있어서 建設業과 같은 경우 이러한 原則을 그대로 따른다면 第4의 費用·收益 對應의 原則에서 벗어나 工事初期에는 缺損이 나타나고 工事後期에는 過多한 利益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는 第1의 發生主義에서 "費用과 收益이 發生한 期間에 「正當하게」 配分되도록" 한다는 原則에도 어긋나게 된다[10]. 그러나 이러한 相互矛盾은 실제로 우리나라 企業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企業들은 企業會計原則보다 稅法을 더욱 重視하기 때문이다. 法人稅法 第9條 各 事業年度의 所得에서 "各 事業年度의 所得은 그 事業年度에 屬하거나 「屬하게 될」 益金의 總額에서 그 事業年度에 屬하거나 屬하게 될 損金의 總額을 控除한 金額으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는데, 이것은 企業會計原則과는 사실상 相値되는 條項이다. 그러므로 이미 企業의 慣行이 된 이상 이제는 企業會計原則 자체가 "一會計期間에 「發生한」 모든 收益"이라는 말을 버리고 稅法과 같이 "屬하게 될"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矛盾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11]. 그리고 未收收益의 경우는 實現主義에 의해서 實現時期를 基準으로 하고 있으나,

---

(10) 그러므로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에서도 營業損益計算에서 (第2節 第3 참조) 長期의 未完成請負工事에 대하여 적정한 利益을 推算하여 當期의 收益에 計上할 수 있게 하였다.

(11) "屬하게 될"이라는 말의 의미는 發生하게 된 期間에 정당히 配分한다는 뜻도 包含할 수 있다.

回收가 確實視되는, 例컨대 都給工事收益과 같은 것은 收益으로 認定하여도 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債權이 확실하므로 未收金形態로 殘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가지 事項의 可能性은 企業 自體의 健全한 判斷에 맡겨야 할 것이다.

(2) 損益計算의 修正

損益計算의 修正問題는 그 나라 企業會計原則이 當期業績主義를 擇하느냐 아니면 包括主義를 擇하느냐에 따라 많은 問題點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은 第2章 第3節의 純損益計算, 第4 損益計算의 修正에 이러한 句節이 있다. "前期損益의 修正이 必要하게 된 경우에는 그 年度의 損益計算書에 큰 影響을 주지 아니하는 것에 限하여 그 年度의 營業外損益으로서 修正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利益剩餘金으로서 修正하여야 한다"고 規定하여 當期業績主義를 내세우고 있다.

日本企業會計原則은[12] 營業外損益에서 "營業外損益은 受入利子 및 割引料, 有價證券賣出利益 등의 營業外收益과 支給利子 및 割引料, 有價證券賣出損失, 有價證券評價損失 등의 營業外費用을 區分하여 表示한다"고 하고, 이어 註10에서 前期損益修正은 移越利益剩餘金 增減項目으로 處理할 것을 指示하고 있어 역시 當期業績主義를 擇하고 있다.

美國의 會計學 論爭歷史를 들지 않더라도 이 包括主義와 當期業績主義의 論爭은 有名한 것이다. 그런데 1952年 美國 AICPA가 ARB No. 43에서 위의 內容으로 받아들였던 當期業績主義를 修正하여 經常項目과 經常外項目으로 나누어 表示할 것을 권고함으로써[13] 다시 包括主義로 돌아가는 듯한 感을 주고 있다. 즉 當期純利益을 計算하는 데 있어서 아래의 4가지 條件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前期에 관련되는 修正事項만을 當期純利益에서 控除할 것을 主張하고 있다. 첫째, 過去期中 特定한 期間과 확실히 관련될 경우, 둘째, 前期의 財務諸表作成日 以後에 發生한 經濟變動에 영향을 받지 않은 事項일 것, 세째, 經營 自體보다 擔當者의 결정에 결과가 주된 影響을 받을 때, 네째, 이러한 決定이 내려지기 前에 合理的인 豫測이 不可能한 경우이어야 한다.

이러한 例로서 前期에 設定한 負債性充當金과 같은 것이 當期에 修正이 되었으나 그 金額이 巨額이 아닐 경우는 當期純損益에 計算되어야 하며, 外上賣出金은 貸損決定時 推定決定하게 되는데 不確實性이 除去되는 期間 (確定이 되는 期間)의 損益計算에 反映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投入된 試驗研究費도 前期修正이 아니라 當期의 損益計算에 해당시키는데, 그 까닭은 이러한 費用들이 企業이 存續하는 한 正常的 營業狀態下에서 每期

(12) 1963에 改正한 企業會計原則
(13) AICPA, ARB No. 9. 1966.12.

同一한 事項 (同一한 金額은 아님)이 反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4가지 條件에 맞거나, 또는 直接 關聯된 修正事項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결국 包括主義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例外事項이 실제로 나타날 경우에는 當期業績主義式으로 利益剩餘金計算書에서 前期損益修正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이러한 권고에 따라 損益計算書項目도 營業利益表示와 함께 經常項目과 經常外項目으로 나누어 表示한 후 加減하여 當期純利益을 表示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經常外項目의 例, 다시 말하면 正常的인 企業去來에서 非反復的으로 나타나는 事項의 例로서 첫째, 事業의 重要한 一部 또는 施設의 廢棄 또는 賣却, 둘째, 短期投資 아닌 長期投資資產의 賣却, 세째, 非正常的인 變動으로 인한 營業權의 一時的인 償却 또는 開發年度의 開發費金額 償却, 네째, 財產의 沒收 또는 徵發, 다섯째. 주요한 換率의 調整과 같은 項目을 들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營業外損益에서 處理되거나 利益剩餘金計算書에서 取扱되던 受取計定의 貸損償却, 在庫資產의 評價損益, 研究開發費의 一時償却, 未收收益으로 計上하였던 契約金額의 修正 및 通常의 換率變動差損益 등은 經常項目으로 取扱하고, 이들의 영향이 클 경우에는 財務諸表에 註釋을 달 것을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日本의 경우에도 역시 1969年 12月에 提示된 企業會計原則 修正案에서 美國의 形式을 받아들여 營業外損益項目 밑에 經常利益을 두고 "經常利益은 營業利益에 營業外收益을 加算한 金額에서 營業外費用을 控除하여 表示한다"고 規定하여 損益計算書의 區分에서 營業損益計算, 經常損益計算, 純損益計算 및 未處分損益計算으로 區分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확실히 이러한 表示方法은 企業의 正當한 收益力을 表示하는 데 보다 더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비록 營業外損益이라 할지라도 反復的이고 繼續的으로 나타나는 것은 企業의 正常的인 運營下에서는 계속 나타남을 의미하며 損益計算書에 表示하는 것이 剩餘金計算書에 表示하는 것보다 적당하기 때문이다.

(3) 特殊販賣에 關한 原則

企業會計原則은 第2章 第2節 第3의 營業損益計算의 營業收益의 測定項目中에서 "아직 販賣가 完了되지 아니한 積送品·試用販賣·豫約販賣 등에 관한 未實現收益은 原則的으로 當期의 收益에 計上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實現主義에 의한 未實現收益의 計上 禁止를 明示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이런 特殊販賣의 경우에 과연 어느 때를 收益의 實現 時點으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點이다. 이에 對한 明文規定은 없으므로 실제로는 各 企業別로 적당히 基準을 세우고 있는 듯 하다.

그런데 法人稅法 第17條 損益의 歸屬事業年度의 第4項, 第6項에서, 特殊販賣의 경우의 費用歸屬年度를 規定하고 있다. 즉 "資產을 他人에게 委託하여 賣買, 讓渡, 讓受함으로써 생긴 損金과 益金의 歸屬事業年度는 그 受託者가 그 資產을 賣買, 讓渡, 讓受한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로 한다"고 하고 割賦販賣의 경우는 "割賦 또는 延拂條件에 따라 當該 事業年度 및 그 후의 事業年度에 있어서 各 事業年度에 回收하였거나 回收할 販賣 또는 讓渡金額과 이에 對應하는 費用을 該當 事業年度의 益金과 損金으로 각각 算入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法人稅法이 賣出收益의 實現基準을 採擇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條項에서도 과연 賣買, 讓渡, 讓受의 時點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여기에서 實現主義의 原則에 알맞은 時點이라면 委託販賣의 경우 受託者로부터 受託販賣計算書를 委託者가 받는 時點, 또는 販賣代金을 받는 時點이 되겠는데, 販賣計算書를 받는 時點이, 대체로 回收基準보다 빠르게 되고, 權利(所有權)가 移轉된 時點에 가깝기 때문에 合理的일 것이다. 그리고 決算節次中에 만약 計算書가 送付되어 와서 決算日까지의 販賣事實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를 整理記入하여 賣出額에 包含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은 試用販賣나 豫約販賣의 경우에도 적용이 될 것이다.

割賦販賣의 경우는 商品이 일단 引渡된 時點과 代金이 回收된 時點의 두 가지로 賣出收益의 實現時點을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企業會計原則에는 아예 이에 대한 言及이 없다. 그런데 割賦販賣의 경우 代金回收가 長期에 걸쳐 分割되어 이루어지고 代金回收上 貸損危險率이 높아, 回收될 때까지 不確實性과 복잡한 事情이 많으므로, 주로 回收基準이 利用되고 있다. 그리고 이 때에는 現金回收基準이 아니라 割賦金 收入豫定期限까지의 代金回收豫定額을 의미하게 된다. 한편 日本의 경우 1969年 12月에 公表된 大藏省企業會計審議會 報告의 企業會計修正案에서 賣出收益의 實現을 商品 등을 引渡한 날로 基準을 삼으려고 한 것은 注目할 만하다[14].

**(4) 剩餘金計算書와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에 關하여**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 第3章은 簡略하게 剩餘金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는데, 剩餘金을 株主의 要求權이 納入資本金을 超過하는 部分으로 定義하고, 이의 區分을 利益剩餘金과 資本剩餘金으로 나누고 있다.

한편 商法에서는 第458條의 利益準備金과 第459條의 資本準備金으로 나누고 있어, 우선 用語上의 差異 問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準備金의 槪念은 英國의 株式會社法에서의 이

(14) 日本大藏省企業會計審議會 報告, 企業會計原則修正案, 注 6(4) 割賦販賣

른바 리저브(Reserve)이고, 剩餘金은 美國에서의 이른바 서플러스(Surplus)임을 알 수 있는데, 內容에서 보면 商法과 企業會計原則이 서로 大同小異하고, 특히 資本剩餘金은 資本準備金과 완전히 같으니 用語의 統一이 時急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企業會計原則의 剩餘金의 개념은 資本總計에서 納入資本金을 控除하는 陰의 槪念을 사용하였는데, 現在 準用되고 있는 商法이 授權資本을 採擇하고 있는 以上 商法 第451條에 따라 資本總計에서 發行株式의 額面總額을 控除하는 것으로 表現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第1節 第2 剩餘金의 區分 後半에서 "「正當한 理由없이」 資本剩餘金을 利益剩餘金으로 對替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規定하였으나, 과연 正當한 理由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言及되어 있지 않다.

위에서 正當한 理由라 함은 商法 第460條에 의한 缺損塡補의 경우를 우선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를 想定할 수가 있다. 즉 再評價했던 固定資產이 陳腐化하여 減價償却한 것에 대한 該當資產의 評價差益(여기서는 再評價積立金)을 부담시키거나 이를 缺損塡補에 充當하는 경우, 資本助成을 위해 증여된 資產에 대한 評價損을 當該資產에 負擔시킬 경우를 豫想할 수 있으나, 여하튼 正當한 理由의 說明이 없어 企業의 裁量에 의존할 수밖 에 없다.

### 3. 貸借對照表 原則

#### (1) 資本에 關하여

企業會計原則에서 資本에 관계된 條項으로서는 第1節 總則의 第4 "資本은 納入資本과 留保利益으로 形成되는 企業에 대한 所有者의 投資이다"와 第4節 資本의 條項이다. 여기에서는 資本의 內容을 資本金과 剩餘金으로 區別할 것과 資本金은 "公稱資本金에서 未納入資本金을 控除하는 形式으로 納入完了資本金을 記載하여야 한다"고 規定하여 資本金의 表示方法에 대해 言及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1962年에 改正實施된 商法을 따르지 않고 舊商法을 따르고 있는 것이니, 商法과 企業會計原則의 괴리를 如實히 드러내고 있다. 우선 이것은 財務諸表規則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現行商法에 따라 發行株式의 總數와 普通株·優先株 등 株式의 種類 및 그 內容과 數를 記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發行할 株式數(授權株式數)에 대하여서도 脚註의 形式을 통하여 記載하여 企業의 將來規模와 現在 狀態를 利害關係者로 하여금 推測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資本에 대한 內容에 있어서도 發行株式에 의한 資本金과 留保利益 및 資本準備金으로 形成되는 것으로서 企業에 대한 所有者의 投資가 아닌 要求權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 流動資產 및 流動負債에 關하여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은 第4章 第2節 資產의 第2와 第3節 負債의 第2에서 流動資產 및 流動負債에 대해 構成項目과 區別方法을 간단히 說明하고 있다. 즉, 1年 以內에 期限이 도달하는 "1年룰(Rule)"에 의해 流動資產과 固定資產을 간단히 區別하고 있는데, 이러한 方式은 財務諸表規則에서도 그대로 準用되고 있다.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에서는 이 項目에 관하여 "一定한 基準"에 따라 分類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一定한 基準은 역시 1年 以內에 期限이 도달하는 것을 基準으로 삼되, 거기에 比較的 자세한 說明이 붙어 있다(15).

例를 들어 預金의 경우, 우리나라의 財務諸表規則 第35條에도 동일한 基準이 있지만, 貸借對照表 作成日字를 起算日로 하여 1年 以內에 期限이 도달하는 것은 流動資產에 속하게 하고, 그 期限이 1年 以上 되는 것은 投資資產으로 認定하는 것 등이다. 有價證券 역시 이러한 例가 適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問題에 대하여 보다 具體的으로 說明하고 問題를 提起하고 있는 것이 AICPA의 ARB No.43이다(16).

여기에서는 流動資產을 營業活動의 正常循環過程 동안 現金化, 販賣 또는 消費될 것으로 期待되는 現金이나 其他 財貨라고 定義하고 있다. 그리하여 一般的인 流動資產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뜻하게 된다. 즉,

ㄱ) 當期營業에 使用될 現金이나, 現金과 同等한 資產項目

ㄴ) 商品·原材料·在工品·製品·貯藏品 및 部分品

ㄷ) 外上賣出金 및 받을어음 기타 受取計定

ㄹ) 任員·從業員·關係會社에 대한 1年 以內에 回收可能한 債權

ㅁ) 正常的인 商去來에 의한 割賦販賣金과 先給金

ㅂ) 當期의 餘裕資金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投資된 市場性있는 有價證券

ㅅ) 各種 先給費用 (先給費用은 當期에 現金化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流動資產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으나 先給費用이 없었다면 次期에 流動資金은 減少될 것이므로 流動資產이라고 볼 수 있다.)

經營活動을 하는 데 있어서 資本은 流動資產의 범주에서 循環을 하게 된다. 즉, 現金이 投入되어 在庫資產이 되고 이것이 다시 賣出되어 現金化된다. 이 循環期間을 通常 一回轉期間이라고 일컬으며 1年의 會計期間 동안에 數回의 回轉이 可能한 業種은 보통 1年

(15) 日本企業會計原則 註13 參照

(16) Paul Grady, *Inventory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 pp. 233~243. 1965.

을 流動資產과 固定資產의 區別基準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煙草·釀造·木材와 같이 一回運轉期間이 1年 以上 되는 業種에서는 1年 以上인 長期가 流動資產區別의 基準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企業에서는 "1年 룰(Rule)"이 適用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다음에 列擧하는 項目들은 流動資產의 범주에서 除外되어야 할 것이다.

ㄱ) 當期 以外의 營業期에 使用 또는 引出하도록 限定되었거나 固定資產의 取得·建設에 用途가 指定된 것, 또는 固定負債 償還에 充當하기 위하여 別途로 積立한 現金이나 預金

ㄴ) 他企業을 支配할 目的 또는 關係會社나 繼續的인 事業上의 利益을 위하여 投資한 有價證券과 貸與金

ㄷ) 1年 以內에 回收可望이 없는 資產賣却代金 또는 關係會社나 任員, 從業員에게 支給한 貸與金·先給金 등과 같은 非經常去來에서 發生하는 受取計定

ㄹ) 減價償却이 可能한 資產

ㅁ) 數期의 營業에 移延償却處理해야 할 長期先給費用

ㅂ) 未償却社債發行差金 및 發行費, 施設移轉 또는 長期賃貸, 再配置費用 등의 移延計定

流動負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項目을 包含시키고 있다.

ㄱ) 製品生產에 必要한 原材料 및 消耗品購買로 인하여 當期에 發生된 外上買入金과 製品 또는 用役의 提供을 約束하고 先受한 金額

ㄴ) 未支給金·給料·手數料·租稅·特許權使用料·稅金·公課 등과 같은 當期와 直接 관련있는 債務

ㄷ) 債務償還이 慣例的으로 短期—12個月 以內—에 이루어지리라고 豫想되는 其他債務

ㄹ) 1年 以內에 滿期가 되는 長期債務

ㅁ) 第三者를 위하여 現金 또는 其他 資產을 受取함으로써 發生하는 代理人으로서의 債務

ㅂ) 正確한 金額을 算定할 수 없는 것(例, 보너스의 支給), 혹은 이미 賣出된 製品에 대한 保證서비스의 경우와 같이 비록 支給對象者는 確定되어 있지 않더라도 年內에 확실히 支出이 豫想되는 債務가 包含된다. 그러나 設或 流動負債의 形態를 가졌더라도, 長期間의 償還을 위하여 積立된 流動資產이 포함되어 있는 負債項目은 流動負債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美國의 會計原則은 具體的인 計定科目을 指定하지 않고 그 性格을 說明하고자 努力하고 있음이 特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은 資產·負債·資本의 項目을 說明함에 있어서 計定科目

을 직접 例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財務諸表規則의 各 計定科目說明과 連結하여 열거된 項目만으로 限定시켜 생각하게 하고 있다. 위에서 美國의 例를 든 것은, 各 項目의 性格을 자세하게 說明함으로써 計定科目이야 會社가 어떻게 정하든 各 項目의 性格에 따라 包括하려는 努力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우리의 表示方法보다 進一步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IV.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의 補完을 要하는 事項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은 前述한 바와 같이 열거식으로 되어 있고, 項目에 대한 具體的 說明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適用하는 데 問題點이 많다. 더구나 企業會計의 慣行은 점차 變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會計原則의 修正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會計原則을 補完하기 위해서 필요한 補充事項을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이를 크게 나누면

첫째, 현재 있는 事項의 內容을 變更 또는 補充하는 일과

둘째,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原則에 없는 것으로서 필요한 事項의 補充이 된다.

첫째의 課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① 一般原則이나 各 項目의 適用에 관한 解說 및 補完 (企業會計原則 第1節)

② 損益計算書 事項으로서 實現主義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解說 (企業會計原則 第2章 第1號)

③ 工事收益基準에 관한 解說 (企業會計原則 第2章 第2節 第3)

④ 製品 等의 製造原價에 관한 解說 (企業會計原則 第2章 第2節 第6 賣出原價)

⑤ 流動資產 또는 流動負債와 固定資產 또는 固定負債와의 區別 基準 (企業會計原則 第4章 第2節 第 2, 第 3 및 第3節 第 2, 第 3)

⑥ 市場性 있는 有價證券에 대한 解說 (企業會計原則 第4章 第5節 第4)

⑦ 貸損充當金 또는 減價償却充當金 등의 充當金 控除에 관한 解說 (企業會計原則 第4章 第2節 第2)

⑧ 減價償却方法에 대한 解說 (企業會計原則 第4章 第2節 第4)

⑨ 各種 資產, 負債, 資本 項目의 貸借對照表 表示方法에 대한 解說

㉠ 在庫資產의 評價 및 貸借對照表價額에 대한 解說(企業會計原則 第4章 第5節 第2)

㉡ 債權에 대한 評價 및 貸借對照表價額에 대한 解說 (企業會計原則 第4章 第5節 第5)

㉢ 有形固定資產에 대한 評價 및 貸借對照表價額에 대한 解說 (企業會計原則 第4章

第5節 第6)

㉣ 無形固定資產에 대한 評價 및 貸借對照表價額에 대한 解說 (企業會計原則 第4章 第5節 第7)

㉤ 社債의 貸借對照表價額表示에 대한 解說 (企業會計原則 第4章 第3節 第3)

⑩ 低價主義의 特例에 대한 解說 (企業會計原則 第4章 第5節 第 3)

⑪ 임시손익 및 前期損益修正에 대한 解說 (企業會計原則 第3章 第2節 第2)

둘째의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에 없는 것으로서 必要한 事項의 補完으로는

① 原價差額의 處理에 대한 解說 및 補充事項

② 內部利益의 除去方法에 대한 解說 및 補充

③ 法人稅와 추징세액에 대한 表示方法의 解說 및 補充

④ 合併時의 會計處理에 대한 解說 및 補充

⑤ 自己株式에 대한 取扱

⑥ 社債에 대한 會計處理

⑦ 外貨換算基準과 換率變動差額에 대한 解說 및 補充

⑧ 負債性充當金에 대한 解說

아래에서 이들 漏落事項 및 補充事項 중 두 가지 경우를 선택하여 考察해 보고자 한다.

**1. 換率變動差額에 대한 會計處理**

우리나라 經濟가 開放體制를 指向하고 國際經濟에의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企業會計原則이 設定되었을 당시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여러가지 補完事項이 必要하게 되었다. 輸出 및 輸入의 增加와 아울러 借款導入은 各 會社에 外換에 대한 인식을 增加시키고, 이것은 다시 換率變動差額이라는 基本的인 問題를 提起하였으나,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原則에서는 이 問題에 대한 言及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本節에서는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의 漏落·補充事項으로서, 外換去來와 外換表示資產 및 負債의 財務諸表 記載時의 共通問題인 換率變動差額에 대해서 言及하고자 한다.

換率의 變動이 企業會計上에 나타내는 問題를 살펴보면

① 外貨로 購入한 資產을 利用하여 획득한 收益에 대응시키는 費用의 配分問題 즉, 적당한 期間損益計算을 위한 收益·費用 對應問題

② 變動換率體制下에서 수시로 變化하는 換率로 인하여 發生한 換率變動差額이 損益에 미치는 영향

③ 輸出中心企業에서 特히 輸入原資材를 使用할 경우 換率變動差額으로 말미암아 輸出

價格(國內換表示)의 變動, 製造原價(國內換 表示)의 變動으로 나타나는 損益問題

④ 國際企業으로서 支店이 海外에 있을 경우, 本支店去來에 따른 諸般問題 특히 未達商品과 같은 決算整理事項이 있을 때의 表示問題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들 問題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法規를 살펴보면, 우선 法人稅法 施行令 第38條의 2에 外換債務에 대한 評價損益 條項이 있는데, 여기에 換率變動差額에 대한 項目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外換借入金이 換率變動으로 인하여 借入 當時의 원貨表示額(원貨記帳額)과 償還하는 원貨金額에 差損益이 생긴 경우에 그 差損益은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處理한다.

① 外換借入金으로 固定資產을 買入, 또는 建設한 때에는 그 差損金은 換率調整計定을 設定하여 이를 그 借入金에 대한 殘存償還期間에 따라 均等하게 償却하고 그 差益金은 當該 事業年度의 益金으로 計上한다.

② 前號 以外의 경우에는 各 事業年度의 償還金額에 해당하는 差損益을 當該 事業年度의 損金 또는 益金으로 計上한다"고 規定하고 있어, 주로 外貨借入金에 대한 說明만이 있을 뿐이지만, 換率變動差額에 대한 會計處理에 대한 見解를 보여 주고 있다.

이 施行令에 따르면 이들 外換債務는 償還時마다 償還額에 相應한 差額을 固定資產의 價額에 算入하고, 經費로 充當한 外換債務는 償還額에 相應한 差損을 費用으로 算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規定을 따를 경우에는 每期마다 未償還殘額에 대하여서 換率差損이 發生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損金에 算入할 수 없으므로 企業의 安定性을 해치고, 期間損益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게 되니, 결국 實質資產의 적정한 表示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제 換率變動差額의 會計處理方法을 보다 合理的인 方向으로 하려면 이 借入金을 使用하여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① 製造原價에 加算 配賦하는 方法

② 營業外費用으로 處理하는 方法

③ 換率調整充當金을 設定하는 方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法人稅法 施行令에서 例示하고 있는 바와 같이

1) 外貨借入金을 使用하여 固定資產을 取得하였을 경우

換率이 우리나라의 현상과 같이 繼續的으로 上昇할 경우에는 決算時에 고정자산가액에 換率變動差額을 加算하여 減價償却을 통하여 費用化시키는 것이 期間損益計算의 適正을 위해서 合理的일 것이다.

그리고 換率의 上昇과 下落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에는 換率調整計定을 두어 資產再評價時까지 留保시켰다가 資產再評價法에 의하여 該當 固定資產을 再評價한 後 그 再評價差額을 換率調整計定과 相計處理하는 方法이 있을 수 있다[17].

2) 在庫資產을 取得할 경우

原資材借款을 통하여 外資借入金으로 原資材를 輸入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在庫資產은 固定資產과 달라 回轉이 빠르므로 消費에 따른 消費數量, 消費單價의 把握에는 복잡한 問題가 개재된다. 즉, 決算 때마다 輸入順序대로 消費된 部分과 未消費部分의 換率變動差額을 計算하여 消費된 부분은 製造原價에, 未消費部分은 在庫資產原價에 配分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計算上의 勞費와 金額의 多寡를 고려하여 만약 큰 變化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營業外費用으로 處理하는 것이 合理的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換率適用基準으로서 決定時點의 換率을 適用할 것이냐 아니면 償還時의 換率에 의하여 償還年度의 費用으로 擇할 것이냐 하는 點이다. 이에 대하여 美國의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제정한 Regulations S-X는 一般的인 適用原則에 있어서의 外貨의 換算基準[18]에서 流動資產, 流動負債 및 移延計定은 貸借對照表 作成日字(즉 會計期末) 現在의 換率을 적용하고; 固定負債, 固定資產 및 資本金은 負債 및 資產의 取得日, 株式發行日 現在의 換率; 收益과 費用項目은 每月의 平均換率로 적용하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年中換率을 加重平均한 換率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基準을 財務諸表의 脚註에 明示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流動資產의 경우 決算時點의 환율로 적용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3) 換率調整充當金을 設定하여 處理하는 方法

外貨借入金으로 固定資產을 購入한 경우에는 再評價問題와 연결시켜 생각하여야 하고, 만약 在庫資產이나 其他資產을 購入하는 데 使用한 경우에는 固定資產의 再評價를 하지 않은 경우로 想定하면 될 것이므로 再評價를 하는 경우와 再評價를 하지 않는 경우로 區分하여 생각해 보자.

**1) 再評價를 하지 않는 경우**

固定資產은 먼저 取得 當時의 換率에 의하여 帳簿에 計上하고 決算日에 가서 決算日 現在의 換率에 의하여 計算해서 나타난 換率差額이 損失이면 이를 그 期의 損失로 記入하고

(17) 이 方法은 USOM에서 AID 차관기업체에 대해 시달한 會計處理方法 中의 하나이다.
Accounting for Foreign Exchange Rate Changes on the Balance Sheet of Development Loan Borrowers. 1965.4.

(18) S.E.C., Regulations S-X, 第3章 Rule 3—09.

同金額을 換率調整充當金으로 設定한다. 이러한 式으로 積立을 계속하여 借入金을 償還할 때 償還 當時의 換率差額을 計算하고 換率調整充當金에서 借款償還의 金額을 一部 부담한다.

2) 再評價를 實施한 경우

外貨借入金으로 구입한 固定資產에 대해 再評價를 實施했을 경우에는 再評價에 의해서 增加된 價額만큼 後에 減價償却 負擔이 높아진다. 따라서 各 決算期末에 當時의 換率에 의해 設定된 換率調整充當金과 償還金을 比較하여 充當金에서 支給한다. 이 경우, 前項의 「케이스」에서는 換率이 계속 上昇하면 償還時에 換率調整充當金이 모자라서 다시 增額하여야 하나, 後者의 경우에는 換率上昇 以上의 物價上昇에 수반하는 適正한 再評價를 實施하였다면 換率變動充當金 設定 以前에 減價償却費 自體가 償還金의 調達源泉이 될 可能性이 있다.

위에서는 資產負債에 대해서 적용할 換率에 대해서 考察하였으므로 其他 收益과 費用에 대해서 적용할 換率基準을 생각하여 본다[19].

收益이나 費用은 會計期間中 빈번하게 계속 發生하는 것이므로 어느 一定時點의 換率보다는 一定會計期間의 平均換率에 의해서 適用되어야 한다. 그런데 平均換率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槪念을 생각할 수 있다.

① 가장 理想的인 方法으로 모든 收益과 費用이 發生한 날의 換率을 平均하는 것이 있겠으나 이는 收益·費用發生이 빈번할 경우에는 거의 不可能하다.

② 一年中 換率을 單純平均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費用과 收益이 均等하게 發生하고, 換率變動이 均等할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期中에 收益이나 費用이 集中되어 發生할 경우에는 다음의 方法이 더욱 有利하다.

③ 收益·費用發生이 集中되어 發生한 期間의 換率을 中心으로 去來量에 따라 換率變動을 加重平均하는 方法이 있다.

### 2. 低價主義適用基準

前節의 換率變動差額은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事項이었으나 本節은 現在 企業會計原則에 있기는 하나 具體的인 言及이 없어 補完을 必要로 하는 것의 代表的인 例로 擧論하여 본 것이다.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 第4章 第5節 第3에는 低價主義의 特例라 하여 "在庫資產에 관하

(19) H.A. Finney and H.E. Miller, *Principles of Accounting—Advanced*, Prentice-Hall, 1970. pp. 505~507.

여서는 그 時價가 取得原價보다 低落한 경우에는 時價에 의하여 評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特例는 現實的으로 利用되지 못해 왔다. 「인플레이션」經濟下에서 대부분의 경우 時價가 取得原價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商法 條文의 資產의 評價方法에 있어서도[20] 이와 類似한 規定이 있으나, 具體的으로 低價主義適用基準에 대해서는 言及이 되어 있지 않으니, 만약 이러한 事實이 나타날 경우 어떻게 適用할 것인가에 대한 補完作業이 時急히 必要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經濟는「인플레이션」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業種에 따라 市場構造가 生產者 中心에서 購買者 市場으로 轉換하고 있고, 더구나 技術革新의 高度化로「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製品價格의 下落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보다 많아졌기 때문이다.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을 보면, 우리나라의 低價主義의 特例와 비슷한 規定을 한 後에[21] 註解에서 商品, 製品 等 直接 販賣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在庫資產에 대해서 低價主義를 適用하여 發生되는 評價損은 損益計算書上의 期末在庫와 貸借對照表上의 期末在庫는 合致하게 되어 있으므로 評價損을 自動的으로 賣上原價에 算入하며, 原材料에 대한 評價損에 대해서는 賣出原價의 內譯으로 原材料評價損科目을 記載한다고 하고 있다.

在庫資產에 관한 品質低下, 陳腐化, 減耗 등의 原因에 의해서 發生되는 評價損은 原價性이 없는 경우에는 營業外費用으로 處理하고 原價性을 가질 경우에는 製造原價, 賣出原價 또는 販賣費에 算入하도록 具體的으로 다루고 있다.

美國의 경우는 ARB No.43에서 在庫資產評價에 관하여 10개의 의견서(Statement)를 提示하여 日本의 경우보다 더욱 자세히 言及하고 있다[22]. 그 重要內容을 보면, 在庫資產의 評價를 하는 데 있어서 低價主義原則을 適用할 경우 期間損益을 가장 明確히 反映시키는 方法을 一律的으로 適用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適用하는 데 있어서 個別的인 品目別로 適用할 것이 아니라 總分類在庫資產에 適用함이 妥當하다고 指摘하고, 이를 每期 繼續的으로 適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評價基準은 財務諸表上에 적당히 表示되어야 하며, 만약 評價基準을 變更하였을 경우에는 變更의 사실과 內容을 財務諸表上에 밝히고, 그것이 當期純利益에 미친 영향이 클 경우에는 이것 역시 밝혀야 된다. 그리고 在庫資產評價損이 相當한 金額에 達하는 경우 이 評價損은 別途計定에 計上하여야 한다. 또, 損益計算書上에는 그 金額을 別途로 表示하여

(20) 商法 第452條 1項에서 流動資產은 取得價額 또는 製作價額에 依한다. 그러나 時價가 取得價額 또는 製作價額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時價에 의하여야 한다.
(21) 日本企業會計原則 第3 貸借對照表原則 中 資產의 貸借對照表價額의 五, A의 後半 및 註 4, 5, 17.
(22) Paul Grady, 前揭書, pp. 244~251.

야 한다. 한편 一定單價로 一定量의 在庫資產을 購買하기로 確定契約을 맺었을 경우에 決算日現在 契約 在庫資產의 時價가 契約價格보다 下落했을 경우에도 그 差額을 評價損으로 計上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더구나 그 內容은 會計節次까지 보다 細部的으로 表現하고 있어 名實共히 會計實務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 V. 結　　言

지금까지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의 問題點 및 改正方向을 美國, 日本의 企業會計原則과 比較하면서 考察하여 왔다. 第2章 企業會計原則의 沿革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政府가 主導的 입장에 서서 制定·公布한 企業會計原則에 比해 自發的으로 成立·發展한 美國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企業會計原則이 비단 企業會計의 길잡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法人稅法, 商法 等 聯關法規 改正의 先導役으로서의 구실까지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法人稅法이 企業會計를 「리이드」해 나가는 입장에 서 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原則을 現實情에 맞게 改正되어야 하며 또 수시로 經營環境 및 會計慣行의 變更에 따라 修正해 나갈 必要가 切實함을 알았다. 日本의 경우 出發環境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였지만 數三次의 改正을 거침으로써 지금도 여전히 企業會計의 眞實한 길잡이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企業會計原則을 實情에 알맞게 改正하는 데는 그 나아갈 方向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선 企業會計原則의 構成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면서 日本과 같이 註解를 붙여 漏落 및 補充事項에 대한 說明을 附加하는 方法과, 美國의 경우와 같이 企業會計原則을 法規式으로 整理하지는 않더라도 繼續 意見書를 發表, 修正해 나가는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美國의 AAA와 같은 會計學會가 없고, 또 硏究機關도 뚜렷이 없는 實情이다. 따라서 계속적이고 수시로 企業會計原則을 연구, 發表할만한 기관이 없다. 그러므로 우선 이런 硏究機關을 두어 硏究시킬 必要가 있다. 韓國公認會計士會나 各 商科大學이 이런 硏究機關의 媒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政府는 企業會計發展의 重要性을 인식하여 많은 支援을 하여야 할 것이고, 理想的으로는 會計硏究委員會를 財務部內에 常設機關으로 設置하여 運營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企業會計原則을 앞으로 修正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本文에서도 言及을 하였지만 방대한 作業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施行되고 있는 商法, 各種 稅法과도 연결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作業이 될 것이다. 한편 企業會計의 重要한 規則인 財務諸表規則과도 연결을 시켜 이것 역시 함께 改正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財務諸表規則은

商·製造企業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金融·保險業과 같은 特殊業種도 包括시킬 수 있는 새로운 業種에 알맞은 特殊財務諸表規則도 必要하다.

本論에서는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의 改正方法으로서 現在 旣存 原則中 補完을 要하는 事項에서 1個와 現行 會計原則에는 言及이 없으나 꼭 必要한 會計原則 1個를 선택하여 理論을 展開하였다. 다만, 여기에서는 本論文의 當初 作成論旨에 비추어 主張을 뚜렷이 밝히지 않고 美·日 會計原則과 比較하여 說明을 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論旨는 早晩間 問題가 될 것이며 우리 實情에 알맞은 會計原則이 早速히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本論文은 앞으로의 企業會計原則 改正方向의 一端에 대해서 論述하였거니와 財務諸表規則의 改正과 함께 企業會計原則 改正의 序論的인 역할을 할 것이며, 全般的인 改正에 一助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